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45
----------	------

제출일자 : 2021. 5. 17.  
제 출 자 : 달성군수



##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 신설(2021. 6. 1. 시행) 으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별표)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04조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1. 4. 22.~5. 12.)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소관 부서</th> <th style="width: 10%;">일련 번호</th> <th style="width: 55%;">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20%;">근거 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td> <td></td> </tr> </tbody> </table>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신 설>		<신 설>		<p>[별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소관 부서</th> <th style="width: 10%;">일련 번호</th> <th style="width: 55%;">위임사무명</th> <th style="width: 20%;">근거 법령</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지정보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td> <td>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 조의3                 </td> </tr> </tbody> </table>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 조의3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신 설>		<신 설>															
소관 부서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 법령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 조의3														

【별 표】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획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li> <li>•같은 조례 제7조</li> <li>•같은 조례 제8조</li> <li>•같은 조례 제9조</li> <li>•같은 조례 제21조</li> <li>•같은 조례 제22조</li> <li>•같은 조례 제23조</li> <li>•같은 조례 제27조</li> </ul>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li> </ul>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4조</li> </ul>
징수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징수법 제5조</li> <li>같은법시행령 제6조</li> </ul>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법 제20조</li> <li>지방세법 제30조</li> </ul>
회계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li> <li>•같은조례 제17조</li> </ul>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li> <li>•같은법시행규칙제15조</li> <li>•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li> <li>•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1조</li> <li>•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li> </ul>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나.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li> <li>•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li> </ul>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li> <li>•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li> <li>•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li> </ul>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li> <li>•같은법 제21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li> </ul>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희망지원과	1	<p>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p> <p>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p> <p>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p> <p>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p> <p>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p> <p>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p> <p>바. 장애등급의 조정</p> <p>사. 장애상태의 확인</p> <p>아. 등록증의 반환명령</p> <p>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p> <p>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p> <p>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복지법 제32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3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9조</li> <li>•같은법시행규칙제10조</li> <li>•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li> <li>•장애인복지법 제32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4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6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7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8조</li> <li>•장애인복지법 제39조</li> <li>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li> <li>•같은법시행규칙제28조</li> <li>•같은법시행규칙제46조</li> </ul>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li> <li>•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li> </ul>
	2	<p>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p> <p>가. 노상방치차량 조사</p>	

소관부서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설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도시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안전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